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서비스 증권

2020년05월26일 작성 발행

회사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 약관에 의하여 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 증권(서비스가입증서)을 드립니다.

반반크루즈

계약번호

2020-02-9007257 (1)

계약자 **홍영미 660215-2*******

가입일

2020년 02월 05일

만기일

2024년 01월 15일

월불입금 **29,000원X48회**

계약금액

1,392,000원

상품내용

① 중국편도 또는 일본편도 크루즈 + 출/도착지 관광

: 3박 4일 기준(크루즈 2박 3일 + 출/도착지 1박 2일), 이용인원-1인, 이용선실-내측(3인 1실 기준)

제공 서비스

크루즈 - 크루즈 선실 및 부대시설(단, 유료시설 제외)

항공 - 국제선 항공료

식사 - 전 일정 식사 포함

관광 - 전 일정 관광 포함

안심 서비스

인솔자 - 크루즈 전문인솔자 1명 동행

가이드 - 관광지별 한국인 가이드(혹은 한국어 가이드) 안내

여행자보험 -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여행시 연령에 따라 상이)

기타사항

예약 - 크루즈 출항 60일 전까지 예약 및 잔금 납입 완료(선착순 마감)

불포함내역 -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세금, 크루즈 선내팁,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 공동경비 및 개인경비

* 2020년 1월 현재 불포함내역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는 반반크루즈 상품의 경우 1인 1,607,000원입니다.

* 불포함사항은 유가, 환율 및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반크루즈 1 상품의 참여 가능 항자는 3인 1실 기준이며 출발 6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3인실 선실은 각 항차마다 보유 유무에 따라 예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크루즈 및 호텔 객실 1인 사용 시 독실 사용료가 발생 합니다.

* 공동경비, 개인경비는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예약 후 취소 시 선사 및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항차 종료일(귀국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일정은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여행일정과 출항 및 기항지 일정은 여행안내 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김순복() 계약번호: 2020-02-9007257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497번길 24-11

1층2호 (소사본동)

홍영미 貴下

14754



(150-7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대표전화 : 1899-9777 / www.preedtour.com

고객상담전화 **1899-9777**

크루즈 여행 서비스 증권

회사는 크루즈 여행 약관에 의하여 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 증권(서비스가입증서)을 드립니다.



프리드투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우편번호 : 07327)
대표전화 : 1899-9777 / www.preedtour.com

크루즈 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프리드투어 (이하 “회사”라 함)의 회원으로 가입한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신불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회사는 크루즈 여행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크루즈 여행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크루즈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가입)

- ① 회사로부터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루즈 여행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의 형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희망에 따라 CMS 입금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형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 ① 제3조는 벌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여행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 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할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약관 및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월납입금 방식을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형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크루즈 여행 특성상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 ①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8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은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제공지역)

회사는 계약시 예정된 지역에서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12조 1항에 정한 사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내용)

- ① 크루즈 여행 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제12조 1항에 정한 사유로 인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품별 크루즈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제정되는 승선계약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크루즈 여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들에게 크루즈 여행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 당해 여행 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다. 다만, 당해 여행 일정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가 항공사, 선박 운행사에서 정한 최소 출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해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요금)

- ① 회사가 알선하는 이용운송·숙박기관에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기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가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여행서비스의 조건은 다음과 각 호의 경우에 하위에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쟁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폐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크루즈 선사의 승선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교통편,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회사는 크루즈 여행 예약을 완료한 이후 크루즈 운항 또는 크루즈 투어 개시일 이전에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제14조에 정한 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 부담금 이외에 크루즈 선사 및 항공사의 환불 규정에 따른 해약취소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 ①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시야기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 ① 회원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해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산식】

정기형 상품(총계약금액을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는 상품)

해약환급금 = 월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일원수 / 총납입기간월수)

- 관리비는 투어비(회원금의 5% (상한 50만원))

- 모집수당은 투어비(계약대금의 10% (상한 50만원))

* 가입하신 상품(월차)에 따라 해약환급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역은 프리드투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preedtour.com)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증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⑤ 회사는 제12조 1항에 정한 사용 이우에 자신의 책임 있는 시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한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회원은 제2항에 정한 해약환급금 공제부담이나 잔여 회비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미 제작된 물품의 제작 비용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

①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항공권 예약, VISA 수속절차 등) 출발 30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앙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지위 양도를 위해 미납 월부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의 일부 포기)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용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감액 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7조 (안전조사·예방 및 책임과 함께)

① 회원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가이드 및 인솔자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②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제14조 6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자증권의 발행)

① 본 계약 성립의 증서로써 발행되는 증권은 전자문서(PDF) 형태로 발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회원이 서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발급 금액 등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제20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